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구분	위원	간사
임원정수	6	1인
재적임원	6	1인
참석위원	6	1인

1. 일시 : 2026. 02. 12(목) 11:00~12:00
2. 장소 : 세한대학교 영암캠퍼스 본관 4층 회의실 / 화상회의
3. 참석 및 불참 위원 : 위원회 정원 6명 (위원장, 위원)
 - 참석위원 위원장 : 강정일(산학협력단장)
위 원 : 최공집, 박재형, 김의중, 이종혁, 박대현
 - 불참석위원 위 원 : 없음
4. 안건 : 2026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안)
5. 회의 내용 및 결의 사항
 - 위원장(강정일)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기로 개회를 선언한다.
 - 위원장(강정일) 2026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2026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본예산 심의건 입니다. 본안은 산학협력단 강수경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수경 과장이 2026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김두환 직원이 부연 설명함.---별지 1 자료)
 - 위원장(강정일) 위원들께서는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들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 위원(최공집) 이번 2026학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강정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서명 : 위원 최공집 위원 박대현)

(박재형 위원, 김의중 위원, 이종혁 위원, 박대현 위원이 동의하다)

- 위원장(강정일)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본인도 찬성하며 2026학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이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대표 간서명자 2인을 제안하자 본인 동의하여 서명하다.)

6. 폐회 선언 : 이상으로 오늘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조서와 회의록이 정서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2.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확인하고 날인 합니다.

위원장
(단장)

강 정 일



위 원

최 공 집



위 원

박 재 형

(인)

위 원

김 의 중

(인)

위 원

이 중 혁

(인)

위 원

박 대 현



- 위원장(강정일)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본인도 찬성하며 2026학년도 산학협력단
본예산이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 대표 간서명자 2인을 제안하
자 본인 동의하여 서명하다.)

6. 폐회 선언 : 이상으로 오늘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조서와 회의록이 정서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2.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확인하고 날인 합니다.

위원장 강 정 일 (인) 위 원 최 공 집 (인)
(단장)

위 원 박 재 형 박 재 형 위 원 김 의 중 김 의 중

위 원 이 중 혁 이 중 혁 위 원 박 대 현 (인)

별지 1 자료

2026회계년도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총괄표

(산학협력단회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과목명	2026년	2025년	증감	과목명	2026년	2025년	증감
운영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4,655,040	3,368,844	1,286,196	운영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4,551,380	2,582,501	1,968,879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0	0	0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0	0	0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0	0	0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0	0	0
기초의현금	1,334,768	1,360,337	(-25,569)	예비비	0	0	0
				기말의현금	1,438,428	2,146,680	(-708,252)
수입합계	5,989,808	4,729,181	1,260,627	지출합계	5,989,808	4,729,181	873,769

1. 산학협력단 정관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 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직교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4.11.01.>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